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박경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2
----------	------

발의연월일 : 2023. 5. 11.

발 의 자 :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이명녀, 김태욱, 안영호,
강혜순, 김도운, 홍영진,
정재환

1. 주 문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여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방재대책 수립의무만 요구할 뿐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인근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난 12월 국회에서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23개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나. 중구 역시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돼 있지만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의무만 요구할 뿐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다. 원전 인근지역 동맹 자치단체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자력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함.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전국도시구군의회의장

4. 촉구문(안) : 붙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1만 구민의 뜻을 담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가결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23개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확대·지정하였으나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의무만 요구할 뿐 그에 따른 주민보호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 중구 역시 16기에 달하는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 위치한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돼 있지만 방재업무의 의무만 주어질 뿐 재정지원은 전무한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다.

이 때문에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와 원전설비 노후화에 따른 방사능 유출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구축과 대비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원전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중구를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자치단체에는 매년 약 94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방사능방재 전담조직 구축과 주민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자력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가결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적극 나서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라.

2023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